



소통하는 의정
공감받는 의회

제39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(제1차 교육위원회)
2022. 3. 17.(목) 10:00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

교육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정상교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: 2022년 3월 8일
- 회부일자: 2022년 3월 10일

3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교육청의 교육시설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- 기금 설치 목적에 관한 사항(안 제1조)
- 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- 기금의 구성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회계관계공무원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기금 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5. 검토의견

가. 조례 제정이유

- 지난 2019년 12월 4일 「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(시행은 2020. 12.4.)이 제정되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에 관한 근거가 마련됨.

제30조(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등) ①교육감은 관할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(이하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
 ④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

- 그동안 재정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금 운용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매해년도 불균형한 재정수입(교부금)에 따른 교육환경개선사업 세출예산 편성 편차가 있었음

[최근 4년간 편성액]

(단위: 천원)

구 분	2019년 최종예산	2020년 최종예산	2021년 최종예산	2022년 본예산	4년 평균	비고
교 부 액	124,367,351	116,179,000	94,257,000	113,741,000	112,136,088	
편성액	중장기	74,046,910	33,693,812	50,216,406	70,327,978	57,071,277
	일반	129,848,592	95,564,560	128,815,568	133,166,283	121,848,751
	합계	203,895,502	129,258,372	179,031,974	203,494,261	178,920,027

- 이에 따라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 편성의 일관성과 학교 노후건물의 안정적 유지관리 및 미래학교 조성에 따른 연도별 시설사업의 안정적 투자가 필요하며, 특히 ‘그린스마트 미래학교’ 및 내진보강, 석면 교체, 샌드위치패널, 외벽벽돌보강, 드라이비트 교체 등 중·장기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연도별 재원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으로 기금 조성을 위해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.

목 차		주 요 내 용
조	표 제	
제 명		충청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1	목적	▶조례 제정 목적 기술
2	기금의 설치	▶기금의 종류: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
3	기금의 조성	▶기금의 조성 자원 - 교육시설법(이하 “법”) 제30조제2항의 재원으로 조성 ▶기금의 적립 규모 - 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 금액
4	기금의 용도	▶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법 제31조에 따른 사업에 사용
5	기금의 관리 및 운용	▶교육금고에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·관리 ▶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
6	회계관계공무원	▶회계관계공무원 지정 - 기금운용관: 행정국장 - 분임기금운용관: 시설과장 - 기금출납원: 기금 업무 담당 사무관 ▶대장, 증빙서류, 사용계획, 결과 보고
7	심의위원회 설치	▶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-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-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- 기금의 조성 및 자원조달에 관한 사항 - 기금의 결산 등 ▶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합·운영 - 심의사항 대신 운영
부 칙		▶공포일로부터 시행

다. 종합의견

○ 본 조례 제정안은 제정 취지와 필요성 및 실효성이 인정되고, 제정 주요 내용과 구성 체계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없이 타당하며, 「법령 입안 및 심사기준」과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 및 집행부 협의와 조례안 예고 등의 입법절차를 준수하여 전체적으로 타당한 조례 제정이라 판단됨.